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6-75 호
의 결 연월일	2016. 02. 29. (제 513 회)

의 결 사 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제출연월일	2016. 02. 29.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1

□ 요　약 ····· 1

Ⅱ. 규제심사안 ····· 2

1. 타인의 토지등의 출입 등 ····· 2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 ····· 8

3.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등 ····· 13

4. 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제공 ····· 23

1. 과태료 ····· 30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1.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신설 * 법률 제9조의3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 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	비대상	불가능
5. 과태료 * 강화 * 법률 제82조	o 수질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o <신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당초 4대강 수계법에 기규정 사항 (수계법은 본조항 삭제 예정)	o 수질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제38조의3)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이하 부과로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제46조의2제1항)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제출명령(제46조의2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비대상	불가능

Ⅱ. 규제심사안

1. 타인의 토지등의 출입 등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 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수질 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국가 또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흙·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1000080540</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타인의 토지등의 출입 등</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행정적규제</td><td>유형/구분</td><td>동의</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환경부</td><td>제안부처</td><td>환경부</td></tr>
<tr><td>담당부서</td><td>물환경정책과</td><td>처리기관</td><td>중앙/지방자치단체</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서민아</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토지 소유자</td><td>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지점의 토지 소유자</td><td>입법예고</td><td></td></tr>
<tr><td>이해관계자</td><td>일반 국민</td><td></td><td>입법예고</td><td></td></tr>
<tr><td>관련부처</td><td>지자체 등</td><td></td><td>의견조회</td><td></td></tr>
</table>
</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존속기한 미설정</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8. OUT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신설(강화)규제내용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 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td></tr>
<tr><td>10. 규제체계도</td><td colspan="4"></td></tr>
</table>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수질 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 또는 조사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조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발생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하천 중심부의 수질 측정, 수변 식생 조사, 자동측정망 부대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정상적인 조사·측정 업무 곤란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수질 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해서 소속공무원 또는 조사자가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사전에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토지의 나무·흙·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조사·측정업무의 원할한 수행 및 토지 소유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및 비규제대안 : 미신설〉

○ 환경부장관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조사대상 및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나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소유자·점유자 등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조사 수행에 애로 발생

〈 규제대안 : 대체 대안 없음〉

○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 등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 대안은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국내외에 측정분석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도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을 할 때 소유자 등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9.22~11.2)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음

〈 기존 규제 및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조사대상 및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나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규정없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시민과의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곤란하고 이로 인한 국가측정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결론 〉

○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생태계 측정 조사 확대를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규정 명시가 반드시 필요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체 대안은 없음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사전에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토록 의무화하는 규제로서 추가적인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국가 또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기술적 집행에는 문제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를 할 때에도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하는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추가적인 규제 소요 비용은 없고, 무형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서 이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9.22～11.2)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9.17～10.20)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수생태계복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수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1000080541</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토지 등의 수용, 사용</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행정적규제</td><td>유형/구분</td><td>결정</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환경부</td><td>제안부처</td><td>환경부</td></tr>
<tr><td>담당부서</td><td>수생태보전과</td><td>처리기관</td><td>중앙/지방자치단체</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지용상</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생태복원
현장</td><td>전국
생태하천복
원사업장
전체</td><td>입법예고</td><td></td></tr>
<tr><td>이해관계
자</td><td>국민</td><td></td><td>입법예고</td><td></td></tr>
<tr><td>관련부처</td><td>중앙부처</td><td>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td><td>의견조회</td><td></td></tr>
</table>
</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구간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사용 할 수 있는 규제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8. OUT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신설(강화)규제내용
○ 수생태계복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td></tr>
<tr><td>10. 규제체계도</td><td colspan="4"></td></tr>
</table>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질개선 및 수생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시 토지수용 및 사용 협의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 사업기간 장기화로 예산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국회 등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마련토록 요구)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권고 조항만 있어 현행 규제로 목적 달성이 어려움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구간내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당해 배정된 예산의 적정 집행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연없이 원활히 추진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및 비규제대안 : 미신설 〉

○ 현행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협상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하천의 생태적 복원이 곤란해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

〈 규제대안 : 〉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수용에 대한 규제 외에는 대체 대안은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됨

〈 해외사례 분석 〉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하천법 제78조, 지하수법 제18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등)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9.22～11.2)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음

〈 기존 규제 및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토지 확보 곤란으로 사업 추진 지연 사례 발생

- 전북 김제시 용암천(09~16) 수생태계복원사업은 사업구역 전체의 토지확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1년)
- 전남 장성군 황룡강(12~17) 수생태계복원사업은은 '14.6월 착공하였으나, 토지확보에 대한 협의 지연(6개월)되어 집행률 저조에 따른 전체 사업 추진 곤란
- 이외에도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 다수 발생

〈 결론 〉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간 내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규제도입 필요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체 대안은 없음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업구간 내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기술적 집행에 문제는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이미 지자체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집행에 어려움은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 제78조, 지하수법 제18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등 다수의 법에서 규정)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으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개선시킬수 있어 무형적 편익이 발생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대상토지의 안정적인 확보로 원활한 예산 집행과 생태적 복원 및 주민편익 제고 등 복원사업 목적 달성 가능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9.22～11.2)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9.17～10.20)

3.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등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배출하는 특정 물질종류 및 배출량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

○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게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등)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1000080542</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등</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행정적규제</td><td>유형/구분</td><td>보고의무</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환경부</td><td>제안부처</td><td>환경부</td></tr>
<tr><td>담당부서</td><td>수질관리과</td><td>처리기관</td><td>중앙행정기관(본부)</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 환경부 수질관리과 : 김경석</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등</td><td>전국의
폐수배출시
설 중
특정수질유
해물질
배출시설</td><td>입법예고</td><td></td></tr>
<tr><td>이해관계
자</td><td>일반
국민</td><td></td><td>입법예고</td><td></td></tr>
<tr><td>관련부처</td><td>지자체
등</td><td></td><td>의견조회</td><td></td></tr>
</table>
</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규제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8. OUT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신설(강화)규제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배출하는 특정물질종류 및 배출량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

○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게 함</td></tr>
</table>

10.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02년 4대강 수계법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도입하여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 대부분 영세한 업체(5종 90%)로 기술·자금 지원 없는 제도시행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실효성 문제로 집행이 저조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 미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행실적이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4대강수계 대상의 배출저감 의무제도보다는 특정물질 관리를 수질법으로 일원화하여 전국단위의 일관성있는 관리 필요

※ 1~5종의 특정물질 배출사업장은 6,596개소로서 이중 적용대상은 하위법령에 반영 예정

※ 수질법이 개정될 경우 4대강 수계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과 관련된 조항 삭제 예정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전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물질의 배출량 최소화를 유도하여 수자원과 수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4대강 수계법에 존치 〉

○ 기존(4대강 수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와 검증 업무가 위탁되어 있어 행정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 조사물질에 있어서도 화학물질배출량조사(PRTR)와 전국오염원조사와도 중복되어 피규제자인 사업장에서 중복규제로 인한 불편을 초래

〈 비규제대안 : 4대강 수계법의 기규정사항 삭제〉

○ 국민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및 국민건강 위해 발생 가능

〈 규제대안 : 4대강 수계법 기규정사항을 그대로 수질법에 규정〉

○ 당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규정은 작성 및 이행 등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배출량 조사에 한정하여 규정 필요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이행명령, 과태료 등 징벌적 수단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 가능

〈 해외사례 분석 〉

○ 미국 EPA는 수질과 관련하여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정보요청, 시설검사, 조사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9.22~11.2)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4대강 수계법상 특정물질 배출량 줄이기 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4대강수계 대상업체 3,696개소 중 242개소(7.4%)에서 저감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등 집행실적 저조

※ 242개소 중 124개소 평가, 2개소 이행여부 확인, 과태료·벌칙 집행실적 전무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에 대한 기업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

〈 결론 〉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질오염 및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규제가 필요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당초 4대강 수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계획에 비해 규제 비용 감소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도입시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규제 준수비용(인력비용, 시료분석 비용 등)과 정부규제비용(시스템 구축비용, 현장조사 및 검증 비용)으로 구분

［한국규제학회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제도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15.7)］

- 사업장의 규제 준수비용은 1~3종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인력비용 약 31억원, 시료분석 비용 48억원 등 총 79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기업체의 연간 인력비용 = [과장급 연봉 × 업무비중 × 사업장수(1~3종)]
+ [사원급 연봉 × 업무비중 × 사업장수(1~3종)]
= 3,113,128,401원

(단위: 원, %)

직 위	급수	연봉	업무 비중	연간 인력비용	연간인력비용 × 사업장수(1~3종)	합계
관리 팀장	과장급	42,234,157	5	2,111,708	1,214,232,014	3,113,128,401
실무자	사원	33,024,285	10	3,302,429	1,898,896,388	

〈 연간 시료 분석 비용 〉

(단위: 원, 개, 회)

구 분	항목당 분석비	항목수	사업장 수 (1~3종)	연간 분석횟수	연간 분석 비용
시료 분석비용	50,000	28	575	6	4,830,000,000

○ (사회적 편익) 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안과 달성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저감을 할 경우 배출기준을 초과했을때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을 회피할 수 있는 편익 발생

-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저감으로 인해 지역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수준이 개선되는 무형적 편익이 발생

*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15.7)에 따르면, 각 종별 업체수의 1%만이 초과부과금을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초과부과금 회피 편익은 연간 약 5,31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 초과부과금 = 처리부과금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연간 처리부과금 산정 내역 〉

특정수질유해물질	오염범위(ppm)		규제치	초과배출농도 최대값×희석률 10-규제치	총유량/1,000	초과량(kg)	kg당 부과액(원)	초과비율(%)	배출허용기준초과율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합계(원)
	최소값	최대값											
페놀류	0	0	5	0	1,329,777	-	150,000	-	3	1.5	5.6920	1.3	-
시안화합물	5	3,130	1	31,299	1,329,777	41,621	150,000	3,129,900	7	1.5	5.6920	1.3	485,062,924,680
구리 및 그 화합물	5	241	3	2,405	1,329,777	3,201	50,000	80,233	7	1.5	5.6920	1.3	12,434,331,87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	10	0.1	100	1,329,777	133	500,000	99,900	7	1.5	5.6920	1.3	5,160,738,487
수은 및 그	0	0	0.005	0	1,329,777	-	1,250,000	-	3	1.5	5.6920	1.3	-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0	0	1	0	1,329,777	-	150,000	-	3	1.5	5.6920	1.3	-
비소 및 그 화합물	3	22	0.25	220	1,329,777	292	100,000	87,900	7	1.5	5.6920	1.3	2,270,414,980
납 및 그 화합물	20	150	0.5	1,499	1,329,777	1,994	150,000	299,900	7	1.5	5.6920	1.3	23,238,820,907
6가크롬 화합물	0	0	0.5	0	1,329,777	-	300,000	-	3	1.5	5.6920	1.3	-
폴리염화비닐 페닐	0	0	0.003	0	1,329,777	-	1,250,000	-	3	1.5	5.6920	1.3	-
트리클로로에틸렌	1	6	0.3	57	1,329,777	79	300,000	19,900	7	1.5	5.6920	1.3	1,850,426,95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	4	0.1	36	1,329,777	53	300,000	39,900	7	1.5	5.6920	1.3	1,236,717,511
합 계													**531,254,375,390**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자에 따른 정액부과금 〉

(단위: 개, 원)

업종	1종	2종	3종	4종	5종	합계
사업자수	355	518	1,331	2,564	45,370	
사업자수/100	3.55	5.18	13.31	25.64	453.70	
업종별 부과금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500,000	
정액부과금	14,200,000	15,540,000	26,620,000	25,640,000	226,850,000	308,850,000

○ (비용-편익 비교) 규제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것으로 판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특정물질 배출정보 조사·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인벤토리 구축으로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새로운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시 기존 특정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에서 지자체 단독으로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 지방청, 지자체가 협업하는 체계로 이행함으로써 집행자원과 능력이 과거보다 향상됨에 따라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이행명령, 과태료 등 징벌적 수단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이미 배출량조사를 실시하던 사항이고 기존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와 전국오염원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배출량조사 및 자료제출에는 문제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전국 오염원조사와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성·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8종에 대하여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음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과 지자체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적정성을 유지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전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관리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최소화를 유도하여 수질, 수생태계 및 국민건강 보호 가능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9.22～11.2)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9.17～10.20)

4. 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제공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특정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관련 정보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1000080543</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제공</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행정적규제</td><td>유형/구분</td><td>제출의무</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환경부</td><td>제안부처</td><td>환경부</td></tr>
<tr><td>담당부서</td><td>수질관리과</td><td>처리기관</td><td>중앙행정기관(본부)</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 환경부 수질관리과 : 김경석</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등</td><td>전국의
폐수배출시
설 중
특정수질유
해물질
배출시설</td><td>입법예고</td><td></td></tr>
<tr><td>이해관계
자</td><td>일반
국민</td><td></td><td>입법예고</td><td></td></tr>
<tr><td>관련부처</td><td>지자체
등</td><td></td><td>의견조회</td><td></td></tr>
</table>
</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규제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8. OUT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신설(강화)규제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td></tr>
<tr><td>10. 규제체계도</td><td colspan="4"></td></tr>
</table>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02년 4대강 수계법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도입하여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 대부분 영세한 업체(5종 90%)로 기술·자금 지원 없는 제도시행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실효성 문제로 집행이 저조

-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 미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행실적이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4대강수계 대상의 배출저감 의무제도보다는 특정물질 관리를 수질법으로 일원화하여 전국단위의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를 목적으로 신설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정물질 배출정보 조사·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할 수 있

으므로 특정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적합한 규제임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4대강 수계법 존치〉

○ 당초 4대강 수계법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해 배출량 뿐만 배출량줄이기 계획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기업에게 보다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비규제대안 : 4대강 수계법 기규정조문 삭제 〉

○ 국민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및 국민건강 위해 발생 가능

〈 규제대안 : 4대강 수계법과 동일한 조문으로 수질법에 규정 〉

○ 당초의 기업부담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행률 제고 등 규제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이행명령, 과태료 등 징벌적 수단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 해외사례 분석 〉

○ 미국

- 업종별 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을 목록화하고, 56개 업종별로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제시

○ 독일

- 법령에서 정한 55개 오염물질(유해물질+일반물질)에 대하여 57개 업종별로 규제물질과 배출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

* Ordinance on requirements for the discharge of waste water into waters(Waste Water Ordinance-AbwV, 2004.6.17)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9.22～11.2)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작성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현실에 맞게 배출량 조사·공개에 한정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시 특히 수질 및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커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배출량에 대한 조사·공개를 기본으로 배출량 관리가 필요

〈 결론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와 더불어 정보공개를 통해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성·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8종에 대하여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음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당초 4대강 수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계획에 비해 규제 비용 감소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규제의 비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정보공개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 준수비용은 없으나 간접비용으로 특정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사회적 비난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정부규제비용은 통합시스템 구축비용 10억원, 현장조사 및 검증비용 74백만원 등 약 11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현장조사·검증 비용 = [공무원 시간당 임금(14,428원/인·시간)] × 3인 × 1일 × (9시간/1일) × 현장조사 사업장 수(192)
= 14,428원 × 3 × 9 × 192
= 74,794,752원

○ (사회적 편익) 사업장의 적극적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감축 노력 등으로 전국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등에 따른 무형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15.7)에 따르면, 각 종별 업체수의 1%만이 초과부과금을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초과부과금 회피 편익은 연간 약 5,31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 (비용-편익 비교) 정보공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성격상 정량화가 어려우나, 규제

비용은 일부기업에 한해 한정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사회적 편익은 일반 공중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추정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특정물질 배출정보 조사·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인벤토리 구축으로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정보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집행자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이행명령, 과태료 등 징벌적 수단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특정물질 배출정보 조사·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인벤토리 구축으로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수단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배출저감 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 또한, 정보공개가 부적절한 경우(공공복리 침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특정물질 배출정보 조사·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유도 가능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9.22～11.2)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9.17～10.20)

1. 과태료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수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제38조의3)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제46조의2제1항)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제출명령(제46조의2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2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0000042110</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과태료</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강화</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행정적규제</td><td>유형/구분</td><td>행정질서벌</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환경부</td><td>제안부처</td><td>환경부</td></tr>
<tr><td>담당부서</td><td>수질관리과</td><td>처리기관</td><td>중앙/지방자치단체</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 환경부 수질관리과 : 김경석, 강미정 사무관</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수질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td><td>-공공하·폐수처리시설 (700㎥/일 이상),
폐수배출사업장 (200㎥/일 이상)
-해당 사업장</td><td>입법예고</td><td></td></tr>
<tr><td>이해관계자</td><td>국민</td><td></td><td>입법예고</td><td></td></tr>
<tr><td>관련부처</td><td>중앙부처</td><td>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td><td>의견조회</td><td></td></tr>
</table>
</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로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8. OUT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9. 종전규제 및</td><td colspan="4">- 현행규제내용
o 수질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td></tr>
</table>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신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당초 4대강 수계법에 기규정 사항 (수계법은 본조항 삭제 예정) - 신설(강화)규제내용 o 수질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제38조의3)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이하 부과로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제46조의2제1항)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제출명령(제46조의2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10.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시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질보전을 위한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제 도입, 배출허용기준 부여, 입지제한 등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황조사 결과 무허가 특정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되는 등 관리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 현행 「4대강 수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도입되는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규정 도입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수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토록 법적 유인책 강화

○ 특정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로서 배출량에 대한 허위보고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도입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및 비규제대안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유지 〉

○ 수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율 저감 및 특정물질의 배출량 최소화 유도 곤란

〈 규제대안 : 대체 대안 없음 〉

○ 금전적인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수단로 대체 대안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이므로 민간 자율성 등에 대한 영향은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시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 부과,

조사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과태료 부과는 다른 입법례*의 수준과 유사

수질법	**제82조(과태료)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9.22～11.2)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은 제재수준이 낮아 수질 TMS 부착 사업자의 자발적 기준 준수 유도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자에 대한 배출량 저감 유도에 부적정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행정제재 없는 법률 규정은 유명무실

〈 결론 〉

○ 공공수역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구분하여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함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 필요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제재로서,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에서 위반행위 적발·집행 등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최소한의 과태료 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동측정기기 및 특정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법적 제재수단이 반드시 필요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수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 특정물질 배출량조사결과 미제출 등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 및 국민의 환경피해 예방 등으로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9.22～11.2)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9.17～10.20)